

#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3명이고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 J가 피해자1·2·3에게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 즉 성폭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3은 가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부담을 느껴 공동대책위원회에 사건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본 보고서에는 피해자3의 사건 접수 사실만 기록했다. 해당 사건이 다뤄지지 않아 아래 서술된 내용만으로 본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는 피해자1이 활동하고 있는 A단체의 자원활동가였고, B단체 간사이기도 했다. 피해자1은 B단체를 만드는 데 함께 했으나 이후 탈퇴했고 피해자2는 연대활동 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해당 단체들의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연대활동이나 세미나 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동료 활동가로 마주치는 관계였다.

### 2)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행위

(가) 가해자는 피해자1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반복했다.

- 피해자1은 2014년 7월 B단체의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가해자의 왼쪽 옆에 앉게 됐는데, 대화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1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듯 만졌다.

- 2014년 8-9월 경 B단체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1의 가슴을 한 손으로 쳤다. 가해자가 의도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당시 상황 상 매우 부자연스런 행동이었다.

- 2015년 9월, C단체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1이 음식접시를 옮기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접시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며 음식접시가 아니라 피해자1의 손목을 잡았다. 불과 2달 전 피해자가 자신을 포함해 타인의 몸에 일방적으로 손을 대지 말라고 가해자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된 일이었다.

(나) 가해자는 피해자2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가했다.

- 2014년 9월, B단체의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옆에 앉은 가해자는 대화도중 맥락 없이 피해자2의 허벅지를 두 차례 치듯이 만졌다. 피해자2는 얇은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닿는 느낌이 선명했다.

(다) 피해자3 개요 생략.

## 2. 경과 보고

### 1) 사건 접수 및 A단체 반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 2015년 9월 25일, 피해자1은 가해자의 반복적인 성추행에 대해 A단체에 신고했다. 이어 9월 30일 피해자2는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A단체에 신고했다. 당시 가해자는 A단체의 자원활동가로 A단체 산하 모임에서 활동했고 B단체의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 A단체는 사건 접수 후 즉시 자체 반성폭력 내규에 따라 반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양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대책위 구성 후 가해자에 의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피해자3과 논의를 거쳐 2015년 11월 11일 피해자3의 사건을 접수해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 2) 가해자에 대한 사건 공지와 조사

- 가해자는 대책위 구성 전인 2015년 9월 25일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1에게 자발적인 활동중지 의사를 전해왔다. 대책위는 2015년 10월 16일 가해자에게 대책위 활동 개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책위 운영 중 대외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와 동선을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 대책위는 2015년 10월 29일 가해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해 피해자1·2의 피해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대책위 요구에 적극 따를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 및 대책위 구성원에게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문서에도 서명했다.
- 가해자는 이후 대책위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해자1과 관련된 단체의 회의에 참가한 것을 인지한 대책위는 공식적으로 가해자의 활동중지를 요청했다. 또 대책위 구성 사실을 공지 받은 다음날인 10월 17일 새벽, 가해자는 피해자1과 함께 활동한 B단체의 메일링 리스트에서 피해자1의 메일주소를 삭제하고 메일을 발송하는 등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며 활동을 지속했다.

## 3) A단체 대책위에서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 가해자는 1차 면담조사 다음날 오전에 입장을 바꿔 대책위에 다음의 이메일을 보내 대책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본인은 A단체의 \*\*\*\*에서 사퇴합니다. A단체 중재위(=대책위)가 진행해온 절차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제3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리인은 곧 선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책위는 재차 대책위 복귀와 요구 사항 준수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2015년 11월 4일 다시 대책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성 또는 인권 단체가 포함된 제3의 절차를 요구했다.
  - A단체 대책위는 가해자의 대책위 확대 요구에 응하는 한편 가해자 관련 조치를 함께 논의할 가해자 소속단체의 참가 필요성을 느껴 대책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대책위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소속단체와 F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 등에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제안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 들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만 대책위에 참여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불참의사를 밝히며 외부 지원과 연대를 약속했다. F여성단체도 사회단체들의 대책위에 개별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기존과 같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해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2015년 11월 16일, 피해자와 가해자 소속단체들을 중심으로 J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됐다.

#### 4) 가해자와 그 대리인에 의한 2차 피해

- 가해자는 의뢰인 J, 대리인 K 명의로 2015년 12월 6일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개입 의뢰서>라는 글을 인권단체 등 제3의 기관과 주변인들에게 발송하였다. 가해자는 해당 문서에서 피해자와 대책위원의 실명을 밝히며,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을 언급하고, 인신공격을 하였다.

#### 5) 가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 2016년 3월 3일, 공대위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3인과 공대위 위원 2인에 대한 3천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장을 수령했다. 공대위는 F여성단체에 소송 지원을 의뢰했고, F여성단체는 성폭력피해자법률기금을 통해 변호사를 지원했다.
- 2017년 7월 21일, 가해자는 공대위 소속단체에 의한 특수협박과 업무방해가 있었다며 배상액을 1천만 원 인상해 총 4천만 원으로 변경했다.
- 2017년 11월 10일 민사소송 결과, 법원은 가해자(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단체의 위력에 의한 협박,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2017년 12월 6일, 공대위가 가해자에게 공대위 활동과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했으나 일주일 뒤 가해자는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이메일로 밝혔다.

### 3. 공대위 조사

#### 1) 피해자 진술의 확인

(가) 가해자가 피해자1에게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반복했는지 여부

- 공대위는 피해자1에 대하여 2015년 9, 10월 중 면담 2회와 서면진술 1회를 진행했다.
- 2014년 7월에서 9월 사이 2번의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1의 허벅지와 가슴에 손을 댄 사건에 대해 피해자1은 놀라 당황스럽고 불쾌했으나 상황인지가 바로 되지 않았고 당시 분위기 때문에 즉시 거부감을 표하거나 문제제기하지 못했지만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매우 부자연스런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1은 당시 현장 상황과 선명한 느낌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2015년 6월 가해자와 당시 그의 애인(현재 배우자) K가 피해자1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K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신체접촉 때문에 불쾌했다는 다른 여성의 사례를 얘기하며 가해자의 부적절한 ‘손버릇’에 대해 경고했다. 이를 들은 피해자1은 자신도 경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피해자1은 K가 자신의 사례까지 알게 된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K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해자에게 자신의 사례를 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1에게 자신이 어디를 만졌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1은 수치심이 들어 자신이 불쾌했던 악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다시는 다른 이의 몸에 일방적으로 손을 대지 말 것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피해자1이 불쾌했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과하겠다고 대답했다.
- 경고 2달 후 C단체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1이 접시를 옮기려 하자 가해자가 접시가 무겁다며 갑자기 손목을 잡았다. 피해자1은 이미 가해자에 의한 불쾌한 신체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자신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다시 반복된 상황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이후 피해자1은 가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의 손목을 일방적으로 잡은 일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가해자는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일전에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사과하는 게 맞는다면서 사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의 이러한 기계적인 사과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공식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A단체에 사건해결을 요청했다.

(나) 가해자가 피해자2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가했는지 여부

- 공대위는 피해자2에 대하여 면담 2회와 서면진술 1회를 진행했다.

○ 가해자는 2014년 9월 B단체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2의 허벅지를 두 차례 치듯이 만졌다. 어두운 테이블 아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피해자2는 바로 문제제기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이후 피해자2는 피해자1의 비슷한 경험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1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유사 사례가 더 있음을 알게 돼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건을 접수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2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3 사건 조사

○ 피해자3 사건에 대해서는 공대위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해자의 소송 제기에도 극심한 압박을 느낀 피해자3이 사건 접수를 철회해 공대위는 조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 2) 가해자 1차 대면 조사

2015년 10월 29일 1차 가해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날 가해자는 공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보하며 문제해결에 협조하지 않았다.

(가) 피해자1에 대해

가해자는 접시를 옮길 당시 손목을 잡은 일 외에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고, 접시가 아니라 손목을 잡은 이유에 대해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한 행위라고 진술했다.

(나) 피해자2에 대해

가해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 자체가 나지 않지만 피해자2가 그렇게 말했다면 본인이 했을 확률은 높다고 진술했다.

## 3) 가/피해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1은 가해자가 최소 두 차례 악수를 빙자해 불편하게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접시를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는 등 성적 불쾌감을 자극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진술한 데 반해, 가해자는 자신이 손목을 잡은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1이 두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가 이뤄졌을 뿐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2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일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이 했을 확률이 높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대위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 4) 추가 진술

공대위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유사하게 활동과 ‘친밀감’을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활동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여성 활동가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도 ‘친밀한 행위’를 반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여성 활동가들은 가해자가 있는 공간에서 위축감이나 불편함을 느꼈지만, 문제 제기하지 못했었다고 진술했다.

아래 2명의 진술인은 공대위에 사건을 접수하진 않았지만, 반성폭력 운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서로 작성해 민사소송에 재판 자료로 제출했다.

○ 진술인1은 가해자의 당시 애인 K와 셋이서 걸어가는 도중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손가락에 깍지를 끼 당혹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 진술인2는 토론회나 뒤풀이 자리에서 가해자가 어깨에 기대거나 무릎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팔뚝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해 매우 불쾌했다고 진술했다.

#### 5) 2차 피해에 대한 판단

K는 가해자의 대리인으로 나서 A단체 대책위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는 제3의 인권단체에 개입을 요구하며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개입 의뢰서>란 문서를 제3의 인권단체 및 주변 단체들에 유포해 피해자의 실명과 사생활을 왜곡하여 공개하고 성폭력 관련 사실관계를 날조했다. 이를 통해 K는 가해자의 성폭력 책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의 성격이나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였다. 피해자 개인정보 공개, 인신공격과 허위사실유포는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피해자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2차 피해를 유발했다. 해당 문서에서 가해자들은 공대위 위원들 또한 인신공격함으로써 공대위 활동 자체를 음해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을 부정했다.

### 4. 사건의 성격규정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방적·상습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주권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성폭력 사건이다. 가해자는 운동사회 활동의 연장으로써의 뒤풀이 자리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일방적으로 접촉했다. 일방적인 신체 접촉은 그 정도가 ‘사소’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친밀성’을 토대로 한 것이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체 접촉은 타인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해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가해에 대한 가해자의 문제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는 공대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피해 사실에 대해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다”, “무의식적 행위”였다는 말을 반복했다. 공대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며, ‘어쩌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반복했을 수 있다는 점에 더 심각성을 느낀다. 또 피해자가 문제제기 했음에도 가해 행위

가 반복되었으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공대위가 구성됐으나 가해자가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피해자와 공대위를 계속해서 음해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심각성을 느낀다.

공대위에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 3명 외에도, 공대위는 활동과정에서 4명의 추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이 중 2명은 재판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서로 제출했다. 이는 가해자에 의한 유사 피해가 상당히 광범위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가해자가 여러 명에 대해 다양한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행한 데서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의 행위는 여성 활동가 동지에 대한 젠더 위계 기반 성폭력이다. 사건 접수 이후 가해자가 보인 일련의 행위가 자기반성과 자정노력을 통한 운동사회 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 역사에 위배됨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공대위 활동을 음해한 것은 최소한의 운동사회 윤리조차 배반한 행위이다.

## 5. 공대위 활동 평가와 과제

### 1) J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석과 과제

본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를 포함해 우리 운동사회에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무의식적’ 신체 접촉이 여성 활동가들에게만 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신체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무의식적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할 수 있는 권력은 누구에게 존재하는가?

사회 변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로서 우리는 누구도 타인을 억압·차별·무시하려는 ‘명시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활동가인 우리도 동지 혹은 타인으로부터 차별적 행동을 지적 받는다. 이를테면,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가 있는 활동가 동지로부터 장애 차별 발언을 지적 받을 때가 있다. 그 경우 ‘무의식적’ 발언이나 행위였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인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장애 차별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돼 조직적으로 공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그만한 일로, 공대위까지 구성할 문제인가’라고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들이 바로 본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우리 운동사회가 고민해야 할 시작이며 종착점이다.

이러한 우리 운동사회 ‘문화’의 한계 속에 본 사건의 가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와 공대위에 대한 음해를 서슴지 않을 수 있었다. 우선 가해자는 조사 당시 자신의 행위가 ‘다른 이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피해자 개인이 예민한 문제로 왜곡·편파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해자3이 자신의 피해를 공대위에 접수한 것임에도, 공대위가 피해자3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외화했다고 이간질하거나, 본 공대위 활동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와 그에 연대하는 이들에 대한 전형적인 공격이다. 즉, 가해자는 소위 ‘꽃뱀 프레임’, ‘피해자 책임론’ 등으로 기존 사회가 해왔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며 다시 한번 피해자를 공격해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피해자와 공대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세움으로써 자신의 가해를 희석

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 2) 공대위 활동 평가

(가) 공동체가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하며 성폭력을 해석해 내는 것

- 일부 가/피해자 단체는 공대위가 주최한 비공개토론회 및 공대위와의 개별적 회의를 통해 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했다. 초기에는 공대위 구성 자체를 비난하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공대위를 꾸릴 사안이나’부터, ‘형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다’까지 다양한 태도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해자 중심적이거나, 피해자보다 가해자와 그 주변인의 안위를 더 염려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후 공대위와 토론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가해자의 시선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석해 왔다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하며 사건을 재해석하는 전향적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공대위의 소중한 성과다.

그간 일부 공대위들에 가해자의 사과와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여부를 사건 ‘해결’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존재했다. 그러나 가해자 한 명의 사과를 중심에 두는 것보다,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문제에 있어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사회에서 공동체가 해당 성폭력 사안을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해 낼 수 있도록 태도를 견인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속적 토론과 열린 태도

- 공대위는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적’ 행위를 빠르게 2차 가해/피해로 지목하고, 단죄하는 방식을 자제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해왔다. 동의할 수 없거나, 문제적이라고 여겨지는 태도에 대해 공대위는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제안했다. 관련 단체나 개인들이 공대위 활동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해 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까봐 침묵하고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면 아래로 숨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대화와 토론을 제안하고, 의제로 만들어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폭력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가해자를 재빠르게 단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해 가는 과정에 존재한다고 본다. 물론 이는 무척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태도라고 본다. 다만 가해자의 제소에 대응하느라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 피해자의 활동 지속과 치유

- 대책위에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다보면 피해자를 일방적·수동적 존재로 위치시키는 뜻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피해자 보호는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피해자에게 일관되게 보호만이 최선인 건 아니다. 공대위 활동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를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놓는 구도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함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자신의 힘을 재구성·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사건을 해석하는 언어를 생성하고 공유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대위 활동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 나간 과정은 피해자와 공대위원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라) 법정 투쟁

- 가해자들이 고소·고발을 남용해 온 전례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먼저 형사고발해, 향후 법정 싸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면 성폭력 사건이 가/피해자 이자간 문제로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단죄보다 공동체적 해결을 중요하게 여겨 고발을 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대위가 활동을 마무리 지을 무렵, 가해자가 피해자와 공대위 위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원치 않던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지난한 소송으로 가해자가 제출한 수백 페이지의 준비서면과 증거라며 제시한 피해자 비방 문서에 일일이 반박할 법적 책임이 생겼고, 그 대응 과정의 업무량은 공대위 고유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구성원들의 활동 역량을 소진시켰다. F여성단체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에선 결국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1인이 공대위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다. 가해자는 소송에서 완전히 패했음에도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데엔 성공했던 것이다.

### 3) 공대위 결합을 거부한 가해자 소속 단체들에 대하여

#### (가) B단체

- 피해자1의 피해는 주로 가해자가 간사로 활동하던 B단체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B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고 가해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사건해결을 위해 B단체에 공대위 참여 또는 협력을 요청했다.

B단체는 2016년 2월 공대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15년 말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활동과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고, 현재 공식적인 외부사업에의 참여는 불가함”을 통보했다.

또한, 가해자의 심각한 사건 왜곡과 공대위 비방을 바로잡기 위해 공대위는 2016년 6월 비공개 토론회를 준비했다. 당시 B단체에 피해자1의 심정을 담은 편지형식의 제안서를 보내 참여를 요청했으나, B단체는 답장을 통해 “피해자1이 거론하는 발언들은 왜곡되어 있고 이런 류의 진실게임에는 전혀 흥미가 없으니 거론하지 말 것과 B단체의 기본입장은 (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논의금지, 엄정중립이며 소송중인 사안에 당사자 이외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끝으로 2018년 3월, 공대위는 B단체에 공대위 활동 평가 간담회 참석과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B단체는 정식 조직도 아니고 느슨한 네트워크일 뿐이라며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일체의 입장 표명이 불가”하다고 알려왔다.

- B단체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며 공대위 결합은 물론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책임이 있다. 그러나 B단체는 성폭력 사건을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조직적으로 해결하고자 여러 단체가 모인 공대위에 초기부터 거리를 두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가 초기 약속을 깨고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건과 무관한 인신공격을 하며 사건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소통이 가능했던 B단체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

- 일반 기업의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일도 기업과 개인들이 책임을 지려 하는데, 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운동 단체이면서도 네트워크 등 조직 형식을 거론하며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반운동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다. 또한 공대위가 다양한 형태로 B단체의 결합과 행동을 요청했지만 소통과 협력을 거부한 채 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B단체의 태도는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 (나) C단체

- 피해자1의 피해 사례 중 하나는 C단체의 뒤풀이 자리에서 발생하였다. C단체는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건을 왜곡한 문서를 제3의 단체들에 배포해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 대리인 K의 소속단체이기도 하다. C단체는 가해자와 K가 공대위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해 책임 인정을 설득한 후 공대위에 참여하려 했다고 한다(별첨문서 참조). 결과적으로 C단체나 가해자가 공대위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다. C단체가 자평하듯 가해자와 K에겐 “두 사람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단체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A단체 대책위가 참여 단위를 확대한 후에도 가해자는 공대위 활동에 복귀하지 않았다.

- C단체의 구성원 3인은 2차 가해자 K에게 재판에 제출될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았고, 이 중 2인이 가해자 측에 진술서를 써주었다. 단체 내에서 논의한 바 없이,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 가해자는 진술서를 수집해 피해자와 공대위원을 공격할 자료로 사용했다. 가해자는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들의 평소 언행까지 재판 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에게 피해자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썼다. 진술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용되었다. 가해자 측에 진술서를 써 주더라도 사실관계만을 적는다면 가해자를 돕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엔 어떤 근거도 없다. 가해자들의 고소·고발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가해자 측에 진술서를 써준 것은 반성폭력 운동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 C단체가 밝히듯 C단체는 구성원 K의 안위를 가장 걱정했고, 가해자와 K를 설득하는 데에 실패한 후에도 사건 해결에 있어 피해자보다 K를 우선시하는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개인적 친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대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가해자 측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2차 피해를 낳았다. 가장 큰 2차 피해를 유발한 피해자 비방 문서 유포는 가해자와 K가 C단체와 소통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 그러나 C단체는 공대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과오를 성찰·반성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존중하며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었다. C단체의 변화는 공대위의 소중한 성과이다.

#### (다) 공대위 미결합 단체가 가해자의 태도에 미친 영향

- 초기 공대위가 구성되고 가해자는 사건해결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대위 활동이 시작된 얼마 후 공대위의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가해자와 그가 속한 단체가 공대위 활동을 불인정·불참해 진상조사 절차를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수단이 없다는 공대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 가해자는 공대위 불인정을 넘어 피해자와 공대위원에 대해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자와 공대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문제의 핵심을 호도했다. 가해자의 민사소송 패소 직후 공대위는 공문을 통해 공대위 활동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나 가해자는 불참을 통보했고 사건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가해자의 이런 행위의 배경엔 가해자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 소속 단체가 공대위에 들어오지 않은 영향도 존재했다. 초기에 B단체와 C단체가 가해자의 입장에 이입하며 일정 정도 가해자 입장을 수용했던 태도도 가해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 4) 향후과제

(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 피해자들은 공대위 활동에서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라, 싸우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 과정은 소중했으나, 피해자 개인의 치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공대위 활동과 치유가 완전히 분리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별도의 치유 과정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자원이 많지 않은 운동사회에서 피해자에게 휴가를 주는 것 이외에 적극적 치유 과정을, 물질적 지원이나 여타의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나) 공대위원의 정서적 상처와 고통

- 모든 투쟁은 소진을 낳는다. 특히 운동사회 성폭력 공대위가 싸워야 할 대상 중에는 '동지', 우리의 공동체 구조와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겪는 자기분열과 고통, 상처는 불가피하다. 이런 과정을 잘 아는 많은 활동가들은 다른 공대위는 해도 성폭력 공대위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실제 성폭력 공대위 활동으로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소진되고, 소진되다 사라지는 역사가 반복되기도 했다. 운동사회 성폭력을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고통과 소진의 문제를 개인이 혼자 감당하다 사라져 버리는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 반성폭력 운동을 위한 공동규약 제정의 필요성

- 공동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과정에 따라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도 공동 규약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공동규약은 각 단체의 반성폭력 규약에 입각해 제정될 수 있다. 운동사회 반성폭력 규약은 2000년 초반 제정되기 시작했으나 이후 반성폭력 운동의 침체 속에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논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성폭력 운동을 위한 규약 업그레이드와 공동규약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대위의 문제의식을 기록해 둔다.

**6. 권고 및 요구**

- 1) 공대위 소속 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2) 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3)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소속 단체에 이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 4) 공대위 소속 단체와 관련 단체는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없이 가해자와 활동하지 않는다.
- 5) B단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조직적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6) 공대위 소속 단체는 위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2018. 8. 23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민중언론 참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네트워크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 <별첨자료>1 J 성폭력 사건에 대한 C단체 평가
- # <별첨자료>2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활동 일지
- # <별첨자료>3 자료 목록 대장
- # <별첨자료>4 공대위의 권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제 단체의 입장

<별첨자료>1

## J 성폭력 사건에 대한 C단체의 자체 평가서

평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피해자분들에게 C단체가 사과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대처한 부분이 많아 C단체에 신뢰를 보냈던 피해자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기에 더욱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받았을 고통을 기억하며 앞으로 반성폭력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C단체의 잘못들을 고쳐가겠습니다.

평가는 세 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첫 번째는 C단체가 사건의 개요를 알게 된 이후 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이고, 두 번째는 가해자를 위한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 세 번째는 가해자 쪽에서 중재를 요청하며 제3의 인권단체에 보낸 2차 가해 문서에 대한 판단과 대처에 관한 것이다.

### 1. 대책위 참여

J는 C단체의 회원이었던 K의 소개로 당시 안지 얼마 되지 않았고 C단체의 회원도 아니었다. 그리고 대책위에서 C단체에 J의 가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비슷한 일이 C단체 다른 회원들과 있었고, K가 함께 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형식으로 일이 마무리 되었기에 J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래서 C단체가 J의 가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안위를 걱정했던 사람은 당시 J과 약혼한 K였다.

C단체에서는 대책위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J가 대책위를 통해 이후 절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반에 자신의 가해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기보다는 자신 없어 하던 J와 전부터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불만을 종종 이야기하던 K였기에 C단체가 대책위에 참여한 상태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우선적으로는 단체 내에서 대책위를 통한 해결로 가기 위해서 가해 책임 인정 등을 설득해야 했고, 대책위 참여는 이를 설득한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가 J의 입장으로 점점 설득당했고 J를 지지하게 되면서 J는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 사실을 부정하고 무고를 주장하고 당시 대책위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C단체가 대책위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당시 대책위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거부를 명확히 했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보고 사건을 처리해 왔던 경험이 많은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포함된 대책위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여전히 설득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아 노력해 보자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단체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실제 대책위가 더 많은 단체로 구성될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불만스럽게 보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C단체가 대책위에 참여하는 일은 사실상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대책위에 C단체가 참여하지 않게 되어 이후 일련의 상황들이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았

다. 대책위에 참여했다면 K가 C단체 회원들에게 진술서를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C단체도 좀 더 일찍 그리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았을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배려해야 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C단체는 놓쳤다. 가해자를 설득하려 했을 때, 이 사건을 운동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안위를 걱정했어야 하는 피해자를 다음 순위로 미뤘기 때문에 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는 K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는데,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유지된 단체가 문제 해결에서 오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 2. 진술서 제출

확인된 바로는 C단체의 3명이 K를 통해서 진술서를 요청 받았다. 진술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서로 자주 연락하는 세 사람이 모두 받았지만, 실제로 진술서가 재판에 제출된 이후에 대책위가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 각자가 진술서를 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판을 위해 사용되는 진술서의 의미와 영향은 같은 내용이라도 어느 쪽에서 제출하는 것이냐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개개인이 진술서를 써준 이유를 여기에 서술하는 것이 평가의 지점은 아니기에 진술서를 쓰는 과정이 C단체 내에서 어떻게 소통되었는지를 평가하겠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서로는 진술서가 재판에 제출되고 나서야 진술서가 작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은 진술서를 요청받았지만 고민 끝에 쓰지 않았는데, 이런 고민 자체를 C단체 내에서 함께 소통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 쓰건 안 쓰건 진술서 작성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축소해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책위 차원에서도 가해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원해졌다고 생각되면서 개인적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진술서나 재판 과정이 반성폭력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자와 대책위에 가는 직접적인 피해와는 분리해서 사고하게 됐고, 단체 안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했다. 대책위의 활동을 지지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직적으로 사고해야 할 것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 3. 2차 가해 문서에 대하여

J가 기존 대책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운동 사회 내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의견을 낼 때,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단체가 함께하는 넓은 범위의 대책위에 대한 이야기를 제기했다. 이제 와 돌아보면 J의 이런 주장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대책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고, 설사 J가 접촉한 다른 단체들이 대책위에 참여하게 되었더라도 이후 재판은 시기의 차이일 뿐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더 진행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있다. 그리고 이는 C단체에서도 반성폭력 운동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에, 가해자를 사건 해결에 함께하게 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있다.

또 C단체가 오해한 부분은 C단체가 가해자에게 설득하고 조연한 부분을 가해자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소한 K와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계속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들으면서 상황을 이끌어나갔는데 이를 너무 늦게 알았다. 그 예가 제3의 인권단체에 보낸 2차 가해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대책위를 구성한다면 접촉해 볼 수 있는 단체로 가해자와의 논의 과정에서 특정 인권단체가 언급되었고, 여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후 추가 논의 전에 이미 가해자쪽이 메일로 2차 가해 문서를 제3의 인권단체에 보낸 후에 '이런 문서를 보냈다'는 언급과 함께 해당 문서를 첨부파일로 받게 되었다. 문서 작성 과정은 물론 논의에서도 함께하기 어렵게 되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나 사건을 풀어내는 과정이 사라져 갔고 C단체가 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게 되었다.

#### 4.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적은 인원의 멤버십을 유지하는 공동체 성격의 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성폭력 운동의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절히 체험했다.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 가해자가 속한 단위가 되었을 때 대책위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민해 보지 못했다. 고민과 협의가 부족했고 노력이 부족했다. 결국 잘 못된 판단과 결정을 낳고 말았다.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조직적으로 입장을 세워 가며 보다 책임 있게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한다.

<별첨자료>2

##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활동 일지

- 20150925 A단체에 피해자1 사건 접수
- 20150930 A단체에 피해자2 사건 접수
- 20151005 A단체 반성폭력대책위(약칭 대책위) 구성 및 1차 대책위 회의  
피해자1 진술 및 진술서 접수
- 20151009 대책위 2차 회의
- 20151010 피해자2 진술
- 20151015 피해자3 대책위에 사건 접수, 1차 진술서 전달  
I법률단체 여성위원회에 자문 의뢰, 대책위 3차 회의  
가해자 J, B단체 페이스북에 행사 홍보
- 20151016 대책위, J 측에 A단체 반성폭력대책위 활동 개시 통보 및 활동 정지와 피해자 동선  
분리 요구  
대책위, C단체에 피해자1 사건 관련 목격 여부 문의 및 추가 피해 1번째 사례  
인지
- 20151017 J, B단체 행사 건으로 메일 발송  
대책위, 가해자에게 B단체 메일 발송 건으로 경고
- 20151019 A단체 감사직 변호사에 피해자3 관련해 법적 자문 받음
- 20151020 대책위 4차 회의
- 20151023 대책위, B단체와 D단체에 대책위 구성 사실 통보 및 가해자 활동 중지 협조 요청  
5차 대책위 회의
- 20151026 F여성단체 상담  
피해자2 피해 진술서 접수
- 20151029 대책위, 가해자 면담 조사 및 대책위의 요구 준수 요청
- 20151030 J, 대책위 불인정 통보  
대책위, J에게 진술요청 메일 발송
- 20151104 J, 대책위 재차 불인정 통보 및 인권/여성 기관이 포함된 제3의 절차 요구  
대책위, J측에 요구사항 준수 재차 요구
- 20151106 대책위 확대 결정
- 20151111 피해자3, 대책위에 공동대응 입장 및 2차 진술서 전달  
대책위 6차 회의
- 20151115 대책위, 가해자에게 진술 재촉구 및 추가 면담 조사 메일 발송  
J 대리인 K, 대책위에 “A단체 대책위의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요청합니  
다” 문서 발송  
대책위, 피해자 및 인권/여성기관과 B단체에 참가제안 문서 발송
- 20151119 대책위 7차 회의 - J성폭력사건해결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로 전환 및 1차  
회의
- 20151123 인권 관련 E단체 면담  
F여성단체 월요법률상담에 피해자1, 2 참가
- 20151125 E단체, 가피해자 모두 단체 회원이 아니므로 참가는 어렵지만 지원 의사 알림  
공대위 2차 회의

20151126 K, 공대위에 제소장 요구하는 메일 발송

20151203 F여성단체 상담  
공대위 3차 회의  
공대위, 성폭력 대응 활동 교육

20151207 K, J 대리인 명의로 E단체 등에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개입의뢰서’ 발송  
E단체, J 측의 개입 의뢰 거부

20151209 J, 공대위에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개입 의뢰서’ 발송

20151210 공대위, “K의 요구에 대한 J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발송

20151211 공대위 4차 회의

20151217 공대위 5차 회의

20151228 공대위, K 측으로부터 추가 문서 수신(“대책위에 의한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2차 서신”)

20151229 공대위 6차 회의

20160104 H단체 및 피해자1 대리인 공대위 결함  
공대위, K 측의 서신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발송

20160106 공대위 7차 회의

20160113 공대위 8차 회의

20160120 법적 대응에 관해서 F여성단체 면담  
공대위 9차 회의

20160204 공대위 10차 회의

20160216 B단체에 대책위 참여 제안과 사실 확인을 위한 서신 발송

20160216 피해자1 관련 000 진술서 및 추가 피해 2번째 사례 진술서 접수

20160218 공대위 11차 회의

20160224 B단체, 대책위 참가 불가 입장 통보

20160225 공대위 11차 회의

20160303 공대위 12차 회의  
공대위 위원2인 및 피해자 3인, J의 민사소송 소장 수신  
(3천만 원 손해 배상 요구)  
F여성단체에 변호사 선임 지원 문의

20160309 공대위 13차 회의

20160304 공대위, J에게 ‘개입의뢰서에 대한 입장(요지)’ 발송

20160310 F여성단체 변호사 선임 지원 가능 의사 확인

20160316 공대위 14차 회의

20160321 E단체에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개입 의뢰서’ 관련하여 J 측에 보낸 답변서 전달  
요청

20160322 E단체 답변서 회신

20160330 공대위 15차 회의

20160405 F여성단체 법적대응 관련 변호사 상담(전체 기본 사실 관계, 조사 결과내용, 피해자3 위임장, 5명의 진술서, 관련자 진술서, 녹취록 공인기관에 의뢰 뒤 제출, 회의록, J 측과의 송수신 내용 전부, 상담일지, 관계도, 운동사회 대책위 문화, 관련 기사 제출하기로)

20160411 공대위 16차 회의

20160413 추가 피해 3번째 사례 진술서 접수

20160415 공대위, 주변 단체에 대한 J 측의 사실 왜곡 사례 인지  
 20160420 공대위, 선고기일통지서 접수 및 연기 요청  
     공대위, D단체 관련 진술서 접수  
 20160427 공대위 17차 회의  
 20160502 피해자3, 공대위 사건 진행 의사 철회  
 20160504 변호사 2차 미팅  
 20160506 전문기관에 J 면담조사 녹취록 의뢰  
 20160518 공대위 18차 회의  
 20160601 공대위 19차 회의  
 20160608 공대위 20차 회의, G단체 000 진술서 수신  
 20160610 1차 변론기일  
 20160612 피해자1, B단체와 C단체에 공대위 비공개 간담회 참가 요청하는 메일 발송  
 20160613 B단체, 피해자1에게 메일로 참가 거절 의사 알림  
 20160614 공대위 비공개 간담회  
 20160617 변호사 3차 미팅  
 20160622 공대위 21차 회의  
 20160706 공대위 22차 회의  
 20160718 공대위 23차 회의  
 20160722 2차 변론기일  
 20160808 공대위 24차 회의  
 20160922 변호사 4차 미팅  
 20161005 C단체 000 진술서 수신  
 20161007 F여성단체로부터 상담사실확인서 수신  
 20161014 3차 변론기일  
 20161118 4차 변론기일  
 20161221 공대위 송년회  
 20170113 5차 변론기일  
 20170117 공대위 25차 회의  
 20170331 6차 변론기일  
 20170512 7차 변론기일  
 20170515 재판부, 화해권고결정문 발송  
 20170526 변호사 5차 미팅  
 20170530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70609 E단체에 사실 확인 요청서 발송  
 20170630 8차 변론기일  
 20170804 J(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손해배상액 1천만원 증액)  
 20170811 9차 변론기일  
 20170817 공대위 26차 회의  
 20170908 변론종결  
 20170911 재판부, 2차 화해권고결정문 발송  
 2017092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71016 공대위 27차 회의  
 20171110 재판부, 원고 패소 선고

20171116 공대위 28차 회의  
20171213 J 측에 대책위 활동복귀 및 이행요구서 발송  
20171214 J, 공대위 요구 거부 메일 발송  
                  공대위 29차 회의  
20180102 공대위 30차 회의  
20180105 공대위, B단체의 J 제명 인지  
20180112 공대위 31차 회의  
20180209 C단체 미팅  
20180213 공대위 32차 회의  
20180227 공대위 33차 회의  
20180313 공대위 34차 회의  
20180327 공대위 35차 회의  
20180403 공대위 워크샵(관계 단체 사건 경위 공유와 공동 평가)  
20180417 공대위 36차 회의  
20180502 공대위 37차 회의  
20180511 B단체에 사건경위 재설명과 사과문 요구  
20180515 공대위 38차 회의  
20180605 공대위 39차 회의, C단체 평가서 수신  
20180629 공대위 40차 회의  
20180711 공대위 41차 회의  
20180807 공대위 42차 회의

<별첨자료>3

## 자료목록 대장

- 공대위 참가 단체 및 민주노총 등 사회운동단체 반성폭력 내규
- 피해자1, 2 진술서와 관련 SNS 기록 및 상담 기록
- 추가 피해 1, 2, 3 사례 당사자 진술서 및 관련 SNS 기록
- J의 활동정지 약속 불이행 관련 SNS 기록
- B단체 입장서 및 피해자1에 대한 이메일
- C단체 000 진술서 및 J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평가서
- D단체 000 진술서
- E단체 사실 확인서
- F여성단체 상담사실 확인서
- G단체 000 진술서
- J 면담조사 녹취록
- 공대위 1, 2차 간담회 기록
- 공대위 중간보고서
- J 측의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개입의뢰서
- J 측의 대책위에 의한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2차 서신
- 위 개입의뢰서와 K 서신에 대한 공대위 입장
- J 및 공대위 준비서면 일체와 판결문대위 42차 회의

<별첨자료>4

## 공대위의 권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제 단체의 입장

공대위는 8월 8일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운동사회 반성폭력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단체들에 사건 보고서를 공유하고 권고 및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은 제 단체가 회신한 내용이다. 단, 피해자 특정 방지를 위해 B단체를 제외한 각 단체 이니셜은 보고서에 게시된 이니셜과 다르게 임의로 처리하였다.

### S단체

2015년 S단체는 J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내규에 따라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구성에 참여해 왔다. S단체는 해당 성폭력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길 기대했으나, 가해자가 대책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공대위 위원을 상대로 4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수년간 고통에 시달려 온 과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S단체는 21일 공대위가 발행하는 <J 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 결정한 권고 및 요구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와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던 B단체 인사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S단체는 다시 한 번 가해자와 2차가해자, B단체에 반성 및 사과를 요구하며, 4년간 사건 해결에 힘써온 공대위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T단체

1. 본 단체의 회원이었던 2차 가해자는 예전에 T단체에서 탈퇴하여 단체 차원의 징계를 진행할 수 없으나 예전의 내부 논의과정에서 가해 인정 없이는 함께할 수 없음을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공대위의 권고 및 요청사항에 따라 가해자의 사과 없이는 함께 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 본 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반성폭력 운동을 위해 공대위와 함께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U단체

U단체는 J공대위의 권고와 요청에 대해 첫째, 공대위의 권고대로 U단체와 U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가해자와 2차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둘째, B단체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조직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하고 셋째, 피해자의 상처회복에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집행단위에게 위임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V단체

J의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후, V단체는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되길 기대하며 반성폭력 내규에 따라 2015년 공대위에 참여하였습니다.

V단체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이 가해자를 징벌하는 데서 나아가 젠더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4년간 사건 해결에 힘써온 공대위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V단체 구성원들도 사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 J는 공대위 활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들과 대책위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년간 고통을 주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방해하였습니다. 또 가해자 측은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신상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인권단체 등 제3의 단체에 발송하며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V단체는 다시 한 번 가해자와 2차 가해자, B단체에 반성 및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V단체는 공대위가 결정한 권고 및 요구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 V단체는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와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W단체**

1. 우리 단체는 이번 J성폭력사건의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그를 위한 공대위의 활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2.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앞으로 우리 단체의 어떠한 활동이나 모임에서도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참여 혹은 후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3. 모쪼록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

## **X단체**

1. 가해자 J와 K는 제기된 문제들을 성찰하기는커녕 그릇된 평화운동과 여성주의에 입각해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가해자들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들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한다.
2. 본 단체는 공대위 활동을 통해 B단체가 여성 활동가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확인했다. B단체의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B단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한다.
3.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 공대위의 결정 및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B단체

공대위는 B단체에 대해서는 가해자 소속 단체의 가해자 징계 권고 및 가해자와의 활동 중단과 더불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조직적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B단체는 8월 17일 서면으로 공대위에 답변해왔다. 공대위는 B단체의 서면 답변서를 애초 보고서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피해자3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본 사건에 대한 B단체의 기본 입장만을 공개한다.

B단체는 서면을 통해 “성원 상호간에 서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나 구속감이 없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전제로 “소모임의 한계 때문에 논의중지와 엄정중립 이외의 선택을 하기 어려워 침묵”하였다고 설명했다. B단체는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 공대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적 가해도 아닌 침묵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권고인지 요구인지는 불확실 하지만)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나 B단체는 “그럼에도 가해자가 우리모임의 성원이었다는 점과 일부 사건의 발생지가 우리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었다는 고통에 대하여 유감의 뜻과 함께 위로의 뜻을 표”했다.